

# 2021년도 제23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9. 9.(목),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227회~228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776건(안전번호 제2021-119967호~121161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119967호(순번 1번)는 블로그에서 음악저작물의 일부를 직접 편곡, 연주하여 게시한 사안으로, 공정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부결함.  
안전번호 119968호~119971호(순번 2번~5번)는 블로그에서 음악저작물의 가사를 번역하여 게시한 사안으로, 공정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부결함.  
안전번호 119972호~121161호(순번 6번~1195번)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2,771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236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1-227회~228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제2021-227회~228회)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2021-227회~228회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내 저작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 및 기타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C 위원: 제1호 안건에서 저작물명 등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A, B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2021-228회 제2호 안건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따

라 전체 비공개하고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음.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제2021-227회~228회)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 명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제2021-228회 제2호 안건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부분인 15쪽부터 18쪽까지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함.

### 3.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께서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제1항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으신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됨. 각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척사유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해당 안건 심의 시 사유를 밝히고 회피하여 주시기 바람.

- A, C, B 위원: 해당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2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2,776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순번은 1번~1195번 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번~26번은 익명(1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 블로그에서 일본 게임 '◇◇◇◇'의 수록곡을 무단으로 리믹스하여 게시한 사안임. 1개의 게시물 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순번 1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 ◇◇◇'라는 제목으로 게시자가 컴퓨터 등으로 직접 채보, 편곡 및 연주한 음악을 스트리밍하고 있으며, 하단에는 유튜브에 게시된 원곡을 링크하고 있음. 편곡한 음악은 원곡 음악 길이의 3분의 1 가량임.  
음악저작물에 창작성을 더한 편곡저작물은 2차적저작물로 독자적인 보호를 받음(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심의대상 게시물에 게재된 음악이 2차적저작물로 보호될 정도의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의위원회가 판단하기 어려우나, 2차적저작물일 경우에도 원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소지가 있음.  
다만 동 사안에 대해 공정이용 여부 및 시정권고의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①게시자는 본인의 음악적 능력 향상을 위하여 채보 및 음악 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원곡을 유튜브 링크를 통해 그대로 소개하고 채보 과정에 대해 간략히 기재함으로써 해당 목적을 드러내고 있음(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②이용된 부분은 전곡의 3분의 1 이하로 일부분이며(이용

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③편곡의 질로 보았을 때 원곡의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도 어려움(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시장대체가능성). 한편 우리 심의위원회는 대표적인 2차적저작물인 영상저작물의 번역 자막에 대하여, 게시자가 직접 제작한 자막의 경우 시정권고의 소극적 요소로 고려하고 있음.

즉 심의대상 게시물은 게시자의 창작성이 반영된 2차적저작물이자 공정이용 해당 소지가 있고, 원저작물에 대하여 시장대체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부결 의견).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1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C 위원: '◇◇ ◇ ◇◇'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그럼 악보는 어디에 나와 있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해당 악보 자체를 블로그에 게시한 것은 아님. 미

디(Musical Instrument Digital Interface)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악보를 기입해야 함. 게시자가 원곡을 듣고 악보를 기입한 후 미디 연주용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연주를 한 것으로 보임. '◇◇ ◇ ◇◇'라는 제목의 의미는 원곡 악보 없이 귀로만 들은 후 악보를 만들어 연주했다는 것으로 해석됨.

- A 위원: 동 사안의 공정이용 여부 판단 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앞서 이용된 부분이 전곡의 3분의 1 이하로 일부분이라고 했는데, 이 정도면 적은 분량은 아닌 것으로 보임. 또한, 편곡의 질에 따른 원곡의 시장가치 영향력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 보임.
- C 위원: 검토보고서 11~12쪽에 심의대상 게시물이 2차적저작물이라고 단정하고 있으나, 창작성이 부가되지 않은 채 단순히 연주를 한 것 같아 단순 복제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임. 물론 단순 복제물이라고 해서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님.
- 오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관련 기재 내용은 게시자의 창작성이 반영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것임.
- C 위원: 순번 1번의 심의대상 게시물은 공정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부결 의견임.
- A, B 위원: 이견 없음. 시정권고의 부결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에 대해 시정권고를 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2번~5번은 각 익명(총 4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 블로그에서 음악저작물 가사의 번역물을 각 게시하고 있는 사안임. 총 4개의 게시물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각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순번 2번~5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4개 안건 모두 유튜브를 통해 원곡을 게시하고 있으며, 각 가사는 게시자가 직접 번역한 것으로 보임. 순번 3번 내지 5번의 경우 음악저작물 및 실연에 대한 감상 등을 함께 기재하고 있고, 순번 5번의 경우 가사 번역과 함께 번역 커미션(소정의 금액을 받고 비상업 목적으로 이용될 작업물을 주문제작하는 창작물 거래 방식)을 홍보하고 있음.

해당 가사를 번역하여 2차적저작물작성하는 것에 각 권리자의 허락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각 사안에 대해 공정이용 여부 및 시정권고의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①게시자는 원곡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기재하거나 타인의 감상을 돕기 위해 가사를 번역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원곡을 유튜브 링크를 통해 그대로 소개함으로써 해당 목적을 드러내고 있음(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순번 5번의 경우 '번역 커미션'을 홍보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및 각 번역 행위가 실제 저작권법에 위반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막바로 불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②이용된 부분은 가사 전체이나, 악곡 부분은 직접 복제되지 않고 가사만을 이용하고 있음(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③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



치는 영향 면에서, 역시 어문 부분을 번역 이용하는 자막파일과 비교하였을 때, 불법영상물의 존재를 전제로 이와 결합하여 이용될 것이 예상되는 자막파일과 달리 가사 번역물이 합법시장의 음악저작물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을 예상할 수 있음. 한편 우리 심의위원회는 대표적인 2차적저작물인 영상저작물의 번역 자막에 대하여, 게시자가 직접 제작한 자막의 경우 시정권고의 소극적 요소로 고려하고 있음.

즉 심의대상 게시물은 게시자의 창작성이 반영된 2차적저작물이자 공정이용 해당 소지가 있고, 원저작물에 대하여 시장대체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함(부결 의견).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2번~5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순번 5번에서 일본어 가사를 우리말로 번역한 수준이 어느 정도로 보이는지?
- B 위원: (해당 블로그에 접속하여 보면서) 해당 게시물의 경우 원곡

의 일본어 가사를 직역이 아닌 의역으로 우리말로 적절히 번역한 것으로 볼 때 게시자가 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번역한 것으로 보임.

- C 위원: 게시자가 자의로 번역을 해서 올리는데, 그러면 번역 커미션을 언제 받는다는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개인적으로 게시자에게 별도로 문의를 하면서 원문을 전달하면 번역을 해주는 것으로 보임.
- B 위원: 용역이나 하청을 받아 거래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보임.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만일 읽고 싶은 외서가 있는데 번역된 책이 없을 경우 번역가에게 개인적으로 의뢰해서 번역물을 받아보는 사례와 유사함.
- A 위원: 만약 개인이 커미션을 주고 번역본을 받은 후에 블로그 등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오진해 전문위원: 해당 원문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다만, 공개를 통해 불법복제물의 존재가 확인되면 시정권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임.
- C 위원: 순번 4번의 경우, 방송 '◇◇◇◇'에 나온 스페인어 노래 가사의 번역 내용이 마음에 안들어 자신이 다시 번역하여 올린다는 내

용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해당 블로그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게시자 자신이 다시 한 우리말 번역과 함께, 원곡에 대한 감상 글을 쓰고, 원곡의 기본정보를 기재한 후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음.
- C 위원: 순번 2번~5번의 심의대상 게시물은 공정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부결 의견임.
- A, B 위원: 이견 없음. 시정권고의 부결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번~5번에 대해 시정권고를 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순번 6번~1195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만화 '던전밥'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49번은 웹하드에서 만화 '던전밥'을 50포인트에 제공 중임. 제1화~제76화를 제공하고 있음. 네이버 시리즈앱에서 정식이용이 가능함.

(영화 '건파우더 밀크셰이크'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934번은 웹하드에서 영화 '건파우더 밀크셰이크'를 310포인트에 제공 중임. CJ ENM에서 2021. 9. 8. 배급한 해외 영화임.

(방송 'D.P.'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168번은 모바일웹하드에서 방송 'D.P.'를 300캐시에 제공 중임. 시즌1의 총 6화 전체 분량인 5시간 10초를 제공하고 있음. 넷플릭스에서 2021. 8. 27. 공개한 드라마임. 넷플릭스에서 정식이용이 가능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순번 6번~1195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순번 6번~1195번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6번~1195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19967호~119971호(순번 1번~5번)는 부결함.  
안전번호 제2021-119972호~121161호(순번 6번~1195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  
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  
는 것으로 가결함.

#### 4. 폐회 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23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23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9. 16.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김연희

위원 심장섭